

# '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9. 24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9. 26

다. 상정일자 : 제35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9. 28) 상정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주 강 우)

가 제안이유

- 피정3동과 구평동사는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축코자 하며
- 지역주민의 여가 활동은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정서함양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평 레포츠공원내 실내 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함.
- 잡종재산 매각은 소규모 토지로서 규모,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없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공유재산 취득 : 3건 3동 3,898.71㎡
- 공유재산 처분 : 1건 1필지 7㎡

다. 재산의 표시

| 구 분           | 소 재 지          | 면 적(㎡)   | 재산가액(천원)  | 비 고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취 득<br>(건물신축) | 괴정동 404-2번지    | 1,712.93 | 998,712   | 괴 정 3 동 사 |
|               | 구평동 159-1외 5필지 | 835.78   | 466,000   | 구 평 동 사   |
|               | 신평동 651-9번지    | 1,350.0  | 1,347,992 | 수 영 장     |
| 처 분<br>(매 각)  | 괴정동 421-10번지   | 7        | 4,900     | 토 지       |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- 공유재산취득 신축건물 3건은 괴정3동사, 구평동사 및 신평레포츠공원 내의 실내수영장으로서 공용 및 공공용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매각 재산인 괴정동 421-10번지의 대지 7㎡는 신청인(이영화)의 건물 담장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서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가치가 없고 건축대지 면적 최소한도(일반주거지역 60㎡이상)에 미달하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 및 답변 요지

| 질 의 자 | 질 의 요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답 변 요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구 본 춘 | 괴정3동사 등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사업비를 이미 집행한 것이 있는 지<br><br>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사업은 이미 집행하고 사후에 격식을 갖추기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니냐 | 괴정3동사와 실내수영장에 대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나 구평동사는 이미 계약 완료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음<br><br>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. |

## 5. 토론요지 : 없음

##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